

의안 번호	1576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9. 27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9. 27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0. 14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일자리창출실장 김영환)

가. 제안이유

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·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기본원칙(안 제1조 ~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, 지원 사업, 보조금 환수(안 제6조 ~ 제10조)
-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8조)
 - 1) 기능 : 지원계획, 사업 지원 및 평가 등에 대한 심의·자문
 - 2) 구성 : 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 12명 이내
 - 3) 임기 : 2년,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다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계화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형성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생략
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~ 차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